

남 동 구
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1913호
2024년 5월 20일
월요일

선 람	기관의 장

공 고

- 공 고 제 1009 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공고

도 로 과 2

○ 공 고 제 1012 호 「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

세 무 1 과 5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동구

편집 : 홍보실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4-1009호

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

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(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)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 처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자전거를 찾아가는 등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5월 17일

남 동 구 청 장

1. 공 고 명 :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
2. 공고기간 : 2024. 5. 17. ~ 5. 31.(공고일로부터 14일간)
3. 처분대상 : 무단방치 자전거 10대(붙임 참조)
4. 보관장소 :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541-7번지
5. 처리방법 : 공고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
가.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, 공고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 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
나. 기증,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
6. 열람대장 : “ 별 첨 ”
7. 문 의 : 남동구청 도로과 도로관리팀(☎032-453-2724)

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(2024. 5.)

연번	사진	내용	
001		발견일시	2024. 5. 7.
		발견장소	구월동 1131-3
		종 류	성인용
		색상/특징	검은색
		제조회사명	미확인
		이동보관일	2024. 5. 17.
		보관장소	남촌동 541-7
		처리결과	이동보관
002		발견일시	2024. 5. 7.
		발견장소	간석동 204-1
		종 류	성인용
		색상/특징	회색
		제조회사명	미확인
		이동보관일	2024. 5. 17.
		보관장소	남촌동 541-7
		처리결과	이동보관
003		발견일시	2024. 5. 7.
		발견장소	
		종 류	성인용
		색상/특징	
		제조회사명	미확인
		이동보관일	2024. 5. 17.
		보관장소	남촌동 541-7
		처리결과	이동보관
004		발견일시	2024. 5. 7.
		발견장소	만수동 638-1
		종 류	성인용
		색상/특징	빨간색
		제조회사명	미확인
		이동보관일	2024. 5. 17.
		보관장소	남촌동 541-7
		처리결과	이동보관
005		발견일시	2024. 5. 7.
		발견장소	남촌동 330-22
		종 류	성인용
		색상/특징	검은색
		제조회사명	미확인
		이동보관일	2024. 5. 17.
		보관장소	남촌동 541-7
		처리결과	이동보관

연번	사진	내용	
006		발견일시	2024. 5. 7.
		발견장소	논현동 607-2
		종 류	성인용
		색상/특징	노란색
		제조회사명	미확인
		이동보관일	2024. 5. 17.
		보관장소	남촌동 541-7
		처리결과	이동보관
007		발견일시	2024. 5. 7.
		발견장소	고잔동 970-21
		종 류	성인용
		색상/특징	파란색
		제조회사명	미확인
		이동보관일	2024. 5. 17.
		보관장소	남촌동 541-7
		처리결과	이동보관
008		발견일시	2024. 5. 7.
		발견장소	고잔동 970-21
		종 류	성인용
		색상/특징	회색
		제조회사명	미확인
		이동보관일	2024. 5. 17.
		보관장소	남촌동 541-7
		처리결과	이동보관
009		발견일시	2024. 5. 7.
		발견장소	고잔동 970-21
		종 류	성인용
		색상/특징	흰색
		제조회사명	미확인
		이동보관일	2024. 5. 17.
		보관장소	남촌동 541-7
		처리결과	이동보관
010		발견일시	2024. 5. 7.
		발견장소	고잔동 970-21
		종 류	성인용
		색상/특징	검은색
		제조회사명	미확인
		이동보관일	2024. 5. 17.
		보관장소	남촌동 541-7
		처리결과	이동보관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4-1012호

「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4년 5월 17일

남 동 구 청 장

「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일몰이 도래하는 국가유산, 시장현대화사업,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지속하고, 상위법령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국가유산(舊문화재)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(안 제3조)
- 시장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(안 제5조)
-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·지정된 토지, 건축물,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(안 제6조의2)
- 상위법령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“자동이체”를 “자동납부”로, “감면규정”을 “특례규정”으로 조문을 정비(안 제7조, 안 제13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(세무1과장)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※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)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의견 보내실 곳

- 주 소: (우 21589)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, 1층 세무1과 (만수동, 남동구청)
- 연락처: ☎ 453-2361, FAX 453-2369
- 남동구 홈페이지(www.namdong.go.kr/입법예고)

4. 개정조례(안): 별첨

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월 일

제 출 자 : 남 동 구 청 장

☐ 제안이유

- 일몰이 도래하는 국가유산(舊문화재), 시장현대화사업,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지속하고자 함
- 상위법령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☐ 주요내용

- 국가유산(舊문화재)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(안 제3조)
- 시장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(안 제5조)
-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·지정된 토지, 건축물,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(안 제6조의2)
- 상위법령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“자동이체”를 “자동납부”로, “감면규정”을 “특례규정”으로 조문을 정비(안 제7조, 안 제13조)

☐ 본 문 : “별첨”☐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별첨”☐ 참고자료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, 제92조의2, 제180조
- 「지방세징수법」 제23조, 제24조

남동구 조례 제 호

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2024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2024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6조의2 중 “2024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자동이체”를 각각 “자동납부”로 한다.

제13조제목 외의 부분 중 “감면규정”을 “특례규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국가유산에 대한 감면) 「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를 <u>2024년 12월 31일까지</u> 면제한다.	제3조(국가유산에 대한 감면)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7년 12월 31일</u> ----- --.
제5조(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)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를 <u>2024년 12월 31일까지</u> 면제한다.	제5조(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7년 12월 31일</u> -----.

0원	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중복감면의 배제) 동일한	제13조(중복특례의 배제) -----
과세대상에 구세를 감면할 때	-----
둘 이상의 <u>감면규정</u> 이 적용되는	----- <u>특례규정</u> -----
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	-----
적용한다.	-----.

[참고자료]

□ 지방세특례제한법

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감면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(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“지방세 감면”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2. 27., 2014. 1. 1., 2014. 3. 24., 2020. 1. 15., 2021. 6. 8.>

1. 서민생활 지원,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,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 2. 특정지역의 개발, 특정산업·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 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- ② ~ ⑧ (생략)

제92조의2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(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(이하 이 조에서 “전자송달 방식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(이하 이 조에서 “자동납부 방식”이라 한다)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. <개정 2016. 12. 27., 2017. 12. 26., 2021. 12. 28., 2023. 3. 14.>

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**자동납부 방식**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
 2. 전자송달 방식과 **자동납부 방식**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
- ② ~ ③ (생략)

제180조(중복 특례의 배제)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

용한다. 다만, 제66조제1항, 제73조, 제74조의2제1항,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, 제66조제1항, 제73조, 제74조의2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. <개정 2023. 12. 29.>[전문개정 2023. 3. 14.]

□ 지방세징수법

제23조(납부의 방법)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. <개정 2023. 3. 14.>

1. 현금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2. 「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(이하 “지방세수납대행기관”이라 한다)을 통하여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결제수단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가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
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

다.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

② 납세의무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**자동납부**할 수 있다. 다만,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0. 3. 24., 2023. 3. 14.>

③ ~ ⑤ (생략)

제24조(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) 삭제 <2023. 3. 14.>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6. <생략>

7. “도시·군계획시설”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.

8. ~ 20. <생략>

제5조(도시·군계획 등의 명칭)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인 경우 도시·군계획, 도시·군기본계획, 도시·군관리계획, 도시·군계획시설,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, 도시·군계획사업 및 도시·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“도시계획”, “도시기본계획”, “도시관리계획”, “도시계획시설”, “도시계획시설사업”, “도시계획사업” 및 “도시계획상임기획단”으로 한다.

② ~ ③ <생략>

제32조(도시·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(이하 “도시·군관리계획결정”이라 한다)이 고시되면 지적(地籍)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·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4., 2013. 7. 16.>

② 시장(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)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·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·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)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(이하 “지형도면”이라 한다)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·고시된 도시·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4., 2013. 7. 16.>

③ 국토교통부장관(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나 도지사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4. 14., 2013. 3. 23.>

④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7. 16.>

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8조의2(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) ①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·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(植生)이 양호한 산지(山地)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
<개정 2011. 4. 14.>

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그 밖의 문제점		
부서별 의견			
협의개요	부 서	제출의견	검토내용